파주운정3 A24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04.30.]

■ 건설위치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파주운정3지구 내 A24BL 국민임대 806호

유 의 사 항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 신청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단지는 국민임대주택(806호) 및 영구임대주택(272호)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4.30.**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 택 명	파주운정3 A24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2024000206

-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인정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안 내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4.30.**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등은 기관추천 대상자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별(우선, 일반) 및 신청순위별로 청약일자가 다르니 반드시 해당 공급유형 및 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유형 및 순위 날짜에 접수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전용면적**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상
일반 가구	29㎡	37㎡	46㎡
중증장애인가구	29㎡ ~ 46㎡		

※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보다 작은 면적의 기준 주택 신청 가능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공급대상별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부적격자 소명 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4.05.20~24	'24.06.05	'24.06.10~12		'24.09.26	'24.10.21~23

※ **공급대상별 입주자격, 신청요건 및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 **(소득 및 자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 **임대조건**

①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입주자 세대구성원의 소득, 자산변동 등에 따라 변경 또는 할증 적용**됩니다.

② 임대조건의 변경(임대조건의 상한, 증액, 할증)은 **공급신청(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및 갱신계약(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한 시점 기준) 시점의 입주자 소득수준 등을 확인하여 계약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기간 중에 소득변경 등에 따라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① 신청접수는 인터넷접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로 진행하며,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② **공급신청은 신청접수일 마감시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은 인증서(전자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청약 연습하기"를 통해 사전 연습이 가능합니다.

④ 신청자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공급 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계	기타 공용	지하주차장		계	주거 약자용	우선 공급	일반 공급		
29A	29.28	17.0740	46.3540	2.5788	11.8140	60.7468	250	-	231	19	철근 콘크리트 라멘구조 / 지역난방	'25.01 (예정)
29B (주거약자)							24	24	-	-		
37A·B	37.69	21.9781	59.6681	3.3194	15.2073	78.1948	175	-	148	27		
46A·B	46.22	26.9522	73.1722	4.0708	18.6490	95.8920	357	-	322	35		

■ 임대조건

공급 형별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	계약금	잔금				
29A·B	13,910,000	695,000	13,215,000	180,870	(+) 18,000,000	31,910,000	75,870
					(−) 8,000,000	5,910,000	204,200
37A·B	24,620,000	1,231,000	23,389,000	239,090	(+) 24,000,000	48,620,000	99,090
					(−) 17,000,000	7,620,000	288,670
46A·B	37,735,000	1,886,000	35,849,000	308,630	(+) 31,000,000	68,735,000	127,790
					(−) 28,000,000	9,735,000	390,290

-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금번 모집 이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2.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table>
<tr><td>무주택</td><td>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td></tr>
<tr><td>세대구성원</td><td>
■ 세대구성원의 범위
<table>
<tr><th>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th><th>비고</th></tr>
<tr><td>• 신청자</td><td></td></tr>
<tr><td>• 신청자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td></tr>
<tr><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r><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r>
<tr><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able>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table>
<tr><td>외국인
배우자</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td rowspan="3">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td></tr>
<tr><td>외국인
직계존·비속</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tr>
<tr><td>태아</td><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td></tr>
</table>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td></tr>
</table>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써 해당 우선공급 신청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자산요건은 보지 않습니다.(분리 배우자와 분리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세대구성원은 자격검증대상 제외)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주거약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1인가구 70%, 2인가구 60%))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공급신청서 작성 시 '일반공급 전환 희망'란 체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을 모집하지 않거나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접수가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접수보다 선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1인가구 70%, 2인가구 60%))에서 마감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무효처리되고 다만,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 경쟁하게 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격별 소득 및 자산 기준

구분		우대항목		최종 소득, 자산기준 (한도)		
		가구 원수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금액	
					총자산가액(원)	자동차가액(원)
전용면적 50㎡ 미만	소득 50% 이하	1인	0인	70%	345,000,000	37,080,000
		2인	0인	60%	345,000,000	37,080,000
			1인	70%	380,000,000	40,790,000
		3인 이상	0인	50%	345,000,000	37,080,000
			1인	60%	380,000,000	40,790,000
			2인 이상	70%	414,000,000	44,500,000
	소득 50% 초과 소득 70% 이하	1인	0인	90%	345,000,000	37,080,000
		2인	0인	80%	345,000,000	37,080,000
			1인	90%	380,000,000	40,790,000
		3인 이상	0인	70%	345,000,000	37,080,000
			1인	80%	380,000,000	40,790,000
			2인 이상	90%	414,000,000	44,500,000

***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1) '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10%p 가산

2) '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20%p 가산

3) '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원수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741,482	2,089,778	2,438,075	2,786,371	3,134,668	3,482,964	3,831,260	4,179,557
2인	2,707,856	3,249,427	3,790,998	4,332,570	4,874,141	5,415,712	5,957,283	6,498,854
3인	3,599,325	4,319,189	5,039,054	5,758,919	6,478,784	7,198,649	7,918,514	8,638,379
4인	4,124,234	4,949,080	5,773,927	6,598,774	7,423,620	8,248,467	9,073,314	9,898,160
5인	4,387,536	5,265,043	6,142,550	7,020,057	7,897,564	8,775,071	9,652,578	10,530,085
6인	4,781,641	5,737,969	6,694,297	7,650,626	8,606,954	9,563,282	10,519,610	11,475,938
7인	5,175,747	6,210,896	7,246,045	8,281,194	9,316,344	10,351,493	11,386,642	12,421,792
8인	5,569,852	6,683,822	7,797,793	8,911,763	10,025,734	11,139,704	12,253,674	13,367,645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자의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세대원 수	공급가능 면적
1인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을 공급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2인	전용면적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3인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4인 이상	전용면적 44㎡ 초과 주택을 공급

※ 위 세대원 수별 입주 가능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보다 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기준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수별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원수에 포함되는 범위**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비 고</th></tr>
<tr><td colspan="2">• 신청자</td><td></td></tr>
<tr><td colspan="2">• 신청자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td></tr>
<tr><td colspan="2">•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r><td colspan="2">•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r>
<tr><td colspan="2">•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r><td rowspan="3">기타</td><td>• 외국인 배우자</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분리배우자 포함</td></tr>
<tr><td>• 외국인 직계존·비속</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에 한함</td></tr>
<tr><td colspan="2">• 아동위탁가정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위탁아동, 태아</td></tr>
</table>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3. 공급일정

■ 공급일정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5">신청접수</th><th rowspan="2">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th><th rowspan="2">당첨자
발표</th><th rowspan="2">계약체결</th></tr>
<tr><th>5.20(월)</th><th>5.21(화)</th><th>5.22(수)</th><th>5.23(목)</th><th>5.24(금)</th></tr>
<tr><td colspan="2" rowspan="2">우선
공급</td><td colspan="2">[인터넷]
5.20(월) 10:00~
5.21(화) 18:00</td><td colspan="3" rowspan="2">미접수</td><td rowspan="3">[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4.6.5(수)
17:00 이후

[서류제출기간]
'24.6.10(월) 10:00
~ 6.12(수) 17:00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 등기우편발송주소
추후별도안내

* 등기우편은
'24.6.12(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td><td rowspan="3">'24.9.26(목)
17:00</td><td rowspan="3">'24.10.21(월)
10:00
~
'24.10.23(수)
17:00</td></tr>
<tr><td colspan="2">[현장]
10:00~15:00</td></tr>
<tr><td rowspan="3">일반
공급
/
주거
약자</td><td>소득
50%
이하
전순위</td><td colspan="2" rowspan="2">미접수</td><td colspan="2">[인터넷]
5.22(수) 10:00~
5.23(목) 18:00</td><td rowspan="2">미접수</td></tr>
<tr><td>미접수</td><td>[현장]
10:00
~15:00</td></tr>
<tr><td>소득
70%
이하
전순위</td><td colspan="3">미접수</td><td>[인터넷]
10:00
~18:00</td></tr>
<tr><td colspan="5"></td><td>[현장]
10:00
~15:00</td></tr>
</table>

※ 인터넷 청약신청은 공급대상자별 신청접수 기간에 24시간 가능하나(단, 첫날과 마감일 제외) 신청서 수정 및 취소는 신청 당일에만 가능

※ 현장 신청접수 장소 : LH파주사업본부 2층 계약실(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220)

※ 현장 계약체결 장소 : 추후 당첨자 별도 통보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 50% 이하자의 신청이 많을 경우 5.24(금)의 소득 70% 이하자의 청약접수는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마감일 5.23(목) 20:00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일반공급 월평균소득 50%이하자가 50%초과~70%이하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50%초과~70%이하자로 간주하며, 50%이하자 지정일의 신청접수 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온라인 신청내용을 변경(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신청당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 5.20(월) 우선공급 신청시, 5.20 온라인 마감시간(24:00) 전까지만 변경가능하며 5.21(화)에는 변경불가
 5.22(수) 일반공급 신청시, 5.22 온라인 마감시간(24:00) 전까지만 변경가능하며 5.23(목)에는 변경불가
- 청약신청은 PC(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청약플러스)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사람 및 철거민, 기관추천대상자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시 응대직원 식사교대(11:30~13:30) 등의 사유로 해당 시간에 방문하시는 고객님의 경우, 대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현장접수 방문시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운정3 A24BL 국민임대 일반공급 신청순위**

①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순위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접속 → 청약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청약플러스 접속**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온라인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인증서 로그인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단지 및 주택형 선택	순위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 접수일 시작일의 오전 10시부터 신청접수 마감일의 오후 18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파주운정3 A24블록 국민임대 , 관리번호 : 2024000206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일반공급용] 일반공급 → 주택명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내역확인 후 발급신청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2024.4.30.)** 해당단지가 있는 **파주시**에 거주시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6.5(수)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PC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인터넷(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인증서 로그인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단지 및 주택형 선택	순위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 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방법

▪ **철거민, 기관추천대상자,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접수일을 포함한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외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접수자 과다 밀집시 번호표 배부 후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 좌석없이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고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접수가능한 재방문 시간을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현장방문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자별 신청자격이 다르며, 지정된 일자에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시 신청 불가).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장소**

신청장소	LH 파주사업본부
주소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220, 2층 계약실
교통편	- 경의중앙선 운정역 → 일반버스 80번(한울마을1단지 정류장 하차) - 경의중앙선 야당역 → 마을버스 85번(운정라피아노 정류장 하차) - 3호선 대화역 → 일반버스 10, 56, 80번(한울마을1단지 정류장 하차)
약도	

5. 서류제출 방법 안내

■ 서류제출 방법 (① 온라인 제출 ② 등기우편 제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① 온라인서류제출 (전자파일업로드)	• 온라인서류제출은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온라인 서류제출 이용시 상기에 언급한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등기우편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일반우편 불가) 접수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24.06.12.)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발송주소] 추후 개별 안내**

■ 온라인서류제출 시 유의사항(PC, 모바일)

- 온라인서류제출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24.6.12.)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플러스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 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6. 입주자 선정

■ 공급대상자별 배정호수

공급형별	일반공급	주거약자	우선공급																	
			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철거민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상한부모가족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국군포로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등	영구임대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무허가건축물등세입자
29A	19	-	231	70	16	-	21	5	4	5	6	-	18	12	-	27	21	13	-	13
29B	-	24	-	-	-	-	-	-	-	-	-	-	-	-	-	-	-	-	-	-
37 A·B	27	-	148	8	5	5	7	2	2	2	1	10	4	3	-	17	2	2	76	2
46 A·B	35	-	322	3	3	11	4	1	2	1	1	6	2	1	81	37	1	1	166	1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등은 기관 추천 대상이므로 기관에서 우리 공사로 통보한 명단에 포함되어있는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신청자라도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약자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공급되오니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또는 설치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가.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공급

1.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초과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1인	70%	2,438,075원 이하	90%	3,134,668원 이하
2인	60%	3,249,427원 이하	80%	4,332,570원 이하
3인	50%	3,599,325원 이하	70%	5,039,054원 이하
4인		4,124,234원 이하		5,773,927원 이하
5인		4,387,536원 이하		6,142,550원 이하
6인		4,781,641원 이하		6,694,297원 이하
7인		5,175,747원 이하		7,246,045원 이하
8인		5,569,852원 이하		7,797,793원 이하

- **출산가구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1) ‘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10%p 가산

 2) ‘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20%p 가산

 3) ‘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1인 70%, 2인 60%)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중 자녀가 많은 순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추첨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파주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④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⑤ 미성년자녀수(19세미만, 태아포함)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	3자녀이상	2자녀	-
⑥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60회 이상	48회 이상 60회 미만	36회 이상 48회 미만

⑦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⑧사회취약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부터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⑨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당해지역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 등으로 재등록된 경우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공급신청자의 전혼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세대 분리되어 있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 **종전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보며, **납입회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배점을 확인**하시기 바람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 이하 (1인 70%, 2인 60%)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추첨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파주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④ 사회취약계층(3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 ① 부양가족 수는 위 "부양가족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당해지역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 등으로 재등록된 경우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 시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가 적용됩니다.

나. 우선공급

■ 우선공급 대상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 <u>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u> 되므로 반드시 아래 공급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대 상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자(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⑦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사람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⑪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⑫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시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고령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⑭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⑮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⑯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⑰「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⑱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다자녀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⑥ 종전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①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②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자녀의 개념에는 태아 포함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아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아목(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대상자는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르며, **대상자 증빙이 가능하고 한차례로 한정**합니다.

※ 바목(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①), 아목(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대상자에 대한 우선공급은 **'20.12.23. 이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우선공급 제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1인 70%, 2인 60%)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추첨
장애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1인 70%, 2인 60%)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1인 70%, 2인 60%)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장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등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파주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자녀수(19세미만, 태아포함)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	3자녀이상	2자녀	-
⑤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60회 이상	48회 이상 60회 미만	36회 이상 48회 미만

⑥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당해지역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 등으로 재등록된 경우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공급신청자의 전혼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세대 분리되어 있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 종전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보며,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위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회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람.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우선공급 순위 및 배점기준표

*** 신혼부부.자녀가 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가구소득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 (2인 60%)이하
② 자녀수(태아 포함)	3명 이상	2명	1명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파주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⑤ 혼인기간(신혼부부만 적용)	3년 이내	3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이내
⑤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만 적용)	2세 이하	3세 또는 4세	5세 또는 6세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2. 신청자격'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7.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4.04.3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각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사본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출생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대 상 자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u>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u>**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파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각 1통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임신진단서	• 공급자격 및 배점부여 등을 위해 태아를 세대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가산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 공급자격 및 배점부여 등을 위해 자녀를 둔 사실을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 공급자격 및 배점부여 등을 위해 양자를 세대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가산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청약순위확인서	• 청약관련 배점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중증장애인 단독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세대원수가 2명인 신청자가 전용면적 5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 출산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 사망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피부양자)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피부양자)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부 추천 명단에 따름(별도 신청)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행정복지센터
⑤ 납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⑥「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3년 이상)인 사람 *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중소기업 장기근속근로자 주택우선공급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⑦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 **기간제·파견 근로자** →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 주거지원시설 입주 확인서	시·군·구청
⑨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시·군·구청
⑩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⑪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⑫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시장 등의 추천서	시·군·구청
⑬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⑭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사람 또는 그 유족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광업공단
⑮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⑯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출입국사실증명서 ※ 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개인별 별도 통지)드릴 수 있으며 요청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파독근로자 우선공급자격을 인정함	행정복지센터
⑰ 민법상 미성년(19세미만)자인 2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단,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부 추천 명단에 따름(별도 신청)	
⑲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사람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사업주체
⑳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㉑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무허가건축물등세입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㉒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행정복지센터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임신진단서(확인서) (해당자) 출생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공사 양식
	태아만 있는 한부모인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일부 서류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해당기관 추천에 따르므로 해당 입증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단, 동의서 및 기본서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	주민등록표등본	(별도제출 없음) *기본제출서류로확인가능
②「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훈(지)청
④「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입주자 선정 참조)**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⑧ 생계·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⑨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한 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제출서류	발급처
① ~ ③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별도제출 없음) *기본제출서류로확인가능
④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피부양자)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피부양자)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⑤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단,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확인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한국부동산원 청약저축가입은행
⑦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소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⑧「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독립)유공자 등 확인서	보훈(지)청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사본	여성가족부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행정복지센터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권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카목 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기관
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수급권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행정복지센터
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청약통장 1면 사본	사업주체
⑪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건설근로자 공제회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2024.09.26.(목) 17:00 이후 발표]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공사홈페이지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주소변경 방법: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전자 계약 [계약기간 : 2024.10.21.(월) 10:00 ~ 10.23.(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table>
<tr><td>계약금
납부</td><td>【1차 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td><td>【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td><td colspan="2">【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td><td>【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td></tr>
<tr><td>(고객)</td><td>(LH→고객)</td><td>(전자계약→고객)</td><td colspan="3">로그인 → 계약체결 → 계약서 보관/출력
(휴대폰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공인전자문서센터)</td></tr>
</table>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

- **당첨자 중 정보취약계층(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현장계약 가능하며,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안내**

○ **유의 사항**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 → 고객플러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table>
<tr><td></td><td>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table>
<tr><td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d><td colspan="2">할증비율</td></tr>
<tr><td>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td><td>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td></tr>
<tr><td>10%이하</td><td>100%</td><td>110%</td></tr>
<tr><td>10%초과 30%이하</td><td>110%</td><td>120%</td></tr>
<tr><td>30%초과 50%이하</td><td>120%</td><td>140%</td></tr>
<tr><td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td><td colspan="2">할증비율</td></tr>
<tr><td colspan="2">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td></tr>
</table>
• (갱신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재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table>
<tr><td rowspan="2">세대원수별 공급면적</td><td colspan="2">할증비율</td></tr>
<tr><td>입주 시</td><td>입주 후 가구원수 변화</td></tr>
<tr><td>1인: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2인: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3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td><td>입주불가</td><td>105%</td></tr>
<tr><td>1인: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2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td><td>입주불가</td><td>110%</td></tr>
<tr><td>1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td><td>입주불가</td><td>115%</td></tr>
</table>
</td></tr>
<tr><td>신청자격</td><td>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 및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td></tr>
<tr><td>공급일정</td><td>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td></tr>
<tr><td>입주자 선 정</td><td>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td></tr>
</table>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중복신청 금지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서류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 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 여건	**■ 단지 내부여건**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8층 규모임 • 본 단지의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 비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여 임대함 • 주거동 주출입구는 주로 돌붙임로 시공되며, 일부 석재질감의 도장 혹은 미장 등으로 마감되며 적용면적은 각 동별로 상이함 • 지붕은 전체동이 평지붕으로 계획되었고,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로 시공됨 • 철근 콘크리트 라멘구조로 시공됨에 따라 내부 벽체는 건식(세대간 벽은 석고보드 복합판넬, 세대 경계벽(복도↔세대내부, 발코니↔거실,침실)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으로 시공되어 벽부착물 설치등 고정용 못을 박을 때 주의를 요함 • 아파트 각 동 1층 모든 라인 저층부는 필로티,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이 시공되며 이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 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음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부위이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라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일부 프로젝트 창)으로 시공되어 있음 • 복도 천장 일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다를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 현관키를 부착하여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아파트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지하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구가 점검구로 설치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함 • 각 동 전후면에 식재되는 수목 등으로 인하여 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고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 지하저수조, 펌프실, 팬룸 및 아파트 PIT내 집수정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복도창호 및 계단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으며 1층 및 저층세대에 방범창살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가로등·공원등과 지하주차장(주차장출입구 2402, 2407동)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1층 및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 외관 디자인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임대공급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및 세부 디자인은 각종 인·허가, 관련 심의(자재선정)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조경석 등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상가) 인근 지상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으로 상가용도와 입주민용도로 별도의 구분·구획이 없으며, 차량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주차대수는 총 745대(지하주차 공동주택: 489대, 지상주차(공동주택): 252대, 지상주차(근린생활시설): 4대(확장형1대포함))이며, 이중 장애인 주차장 24대(지하11대), 확장형주차 230대(지하147대), 경차주차 47대(지하45대), 전기차 충전소 30대(지하30대)임 •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및 대수는 계획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과 연결된 구조로써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임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단지배치상 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해 지하주차장 상부에 천창(탑라이트)이 설치되며 단지 내 주동 위치와 층에 따라 지하주차장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불빛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트레이 등의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됨 • 자전거 보관대는 단지 전체 법정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단지 내 분산 설치되나, 동별로 동일한 수량이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는 것은 아님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근로자휴게실,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방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작업공구, 장비, 비품, 도서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과 단지 외부도로 사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 처리를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보도·조경공간·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동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지하주차장 및 놀이터 등에 CCTV가 설치됨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측면부나 옥상부에 실외기가 설치됨으로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옥외 생활자원보관소가 설치됨에 따라 냄새,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시 위치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위치변경 요청이 불가함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의 1층 내·외부에 별도의 실외기실 구획 설치하며, 경비실은 지붕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가동 시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생활자원보관소, 자전거보관대 등 휴게시설 및 산책로 등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시설물과 인접한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팜플렛 단지배치도 참조)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채광창, 자전거보관대, 재활용품보관소, 장비반입구, 옥외계단실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량통행구간 높이는 2.7m이며, 주차구간 높이는 2.1m입니다. 다만 차량통행구간 높이는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트레이

등의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의 간섭으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지하주차장 PIT, 및 2401동, 2405동 지붕층에 설치됨(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403동 옥탑층에 TV시청을 위한 공청 안테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차량 출입의 원활한 진행과 입주자의 편의를 위한 번호인식 주차 관제로 설치됨
- 에어매트 설치구간은 교목, 관목 등의 식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추진과정 및 소방관련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옥상에 조경이 계획되어 있으나, 출입 및 이용이 불가함
- 향후 대지경계 부분에 조경석, 식수대, 울타리, 가로수 등이 설치되어 보행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현관, 발코니 등에서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함
- 벽걸이 TV 고정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경량 벽체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함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주방가구 씽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씽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함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며 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 없음
-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에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주방가구, 반침가구,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렛 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음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임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2401동 4~8층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상이하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구조임 • 단위세대내 주방보조등은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 • 세대내 현관입구, 주방 등에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주택형 26A, 26B, 29A, 29B 세대 세탁실은 욕실 내부에 설치되어 화장실 문열림폭, 천정고를 초과하는 기계기구(세탁기, 건조기등)는 설치할 수 없음 • 주거약자세대에는 욕실 비상콜 및 욕실 출입구 하부 센서등(풋라이트등)가 설치 될 예정 **■ 학교 개교 시기** • 초등학교는 2026.3월 개교 예정인 (가칭)운정5초 통학구역이나 개교 전까지 인근학교로 임시배치 예정이며, 임시배치교 확정 시 별도 공지예정 • 중학교는 교하·운정중학군(교하중, 두일중, 심학중, (가칭)운정5중) 배치 예정으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근거리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 고등학교의 경우 파주시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각 고등학교에서 정원 및 결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권과 전학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학교별 정현원 현황 및 학생, 학부모 선택에 따라 타시군으로 배치될 수 있음 • 지구내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학교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 등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지구내 학교 등 교육시설 용지(유치원 포함)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향후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일반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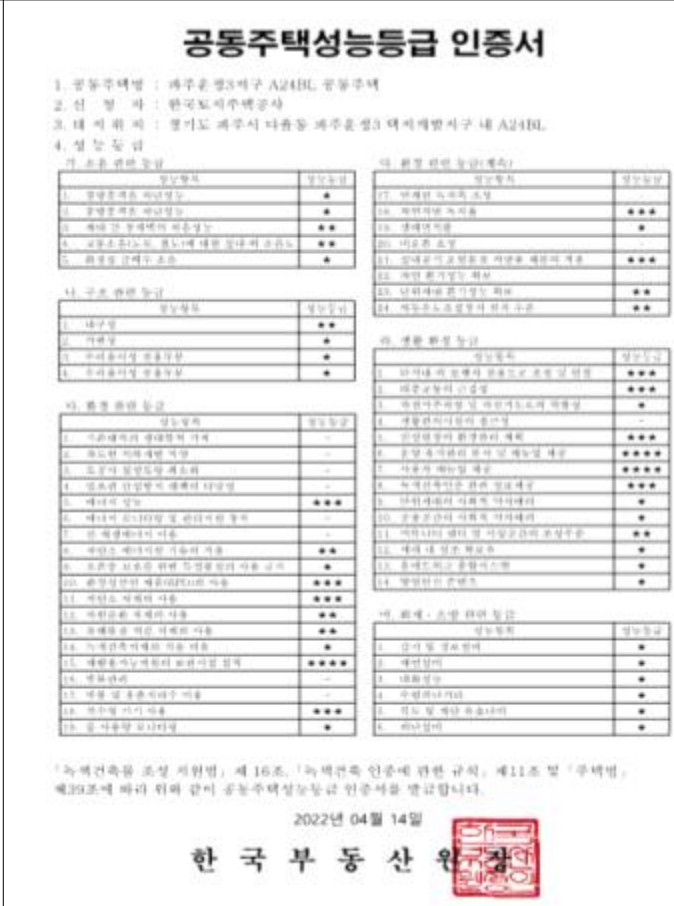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 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11.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 상기 성능등급은 예비인증 내용으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기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지구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파주운정3 A2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420-82-00573)	중앙건설(주) (136-81-12051) 성보건설산업(주) (220-81-27029) 금도건설(주) (414-81-04994) 찬호종합건설(주) (408-81-24184) (주)기전사 (215-81-02574) (주)디앤티일렉 (224-81-44563) (주)디테코 (127-81-94985) (주)대성이엔씨 (288-81-00521) (주)남두 (202-81-58261) (주)제이티코어 (815-88-01767) (주)동양씨엔티 (123-81-79401) (주)에스엠테크뉴 (127-86-27098) (주)샤인개발 (575-81-00158) (주)한국기업 (365-88-00661)	-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마인종합건축사사무소 마인엔지니어링(주) (주)진전기엔지니어링 대평엔지니어링(주)

13.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거실	세대단말기 높이조정(바닥면에서 1.2M 내외)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 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 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풋라이트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세대단말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LH 파주사업본부 주택품질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시 안내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원대상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4.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삭제 <2022. 9. 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삭제 <2022. 9. 6.>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 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1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지방세정 자료

		주택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예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당첨자 ARS	1661-7700	
인 터 넷	파주운정3 A24BL 홈페이지 http://pajua24.co.kr	
	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공사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패·부조리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30.

LH 경기북부지역본부